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10. 12.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0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65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 ('99.10.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 성 대

가. 개정이유

- 洞 행정구역중 공덕동 로터리, 용산선철도, 동도중·고등학교 담장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지역을 합리적인 行政洞 경계조정으로 생활권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洞경계조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洞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도화제2동청사 이전으로 도화제2동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덕제2동 관할구역인 공덕동로터리 일부(공덕동 427번지 일대 0.0176㎢)를
⇒ 신공덕동으로 편입
- 도화제1동 관할구역중 용산선철로변 일부(도화1번지, 25번지 일대 0.003㎢)를
⇒ 신공덕동으로 편입
- 염리동 관할구역중 동도중고등학교 옆 일부(염리동 151번지 일대 0.0006㎢)를
⇒ 공덕제2동으로 편입
- 도화제2동청사 소재지를 도화동 346-3호에서 도화동 413-6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염리동구역중 공덕동로타리와 용산선철도 및 동도중고등학교 담장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동경계를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도화제2동사무소를 도화동 346 - 3에서 도화동 413 - 6으로 청사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관련 별표의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의 동사무소관중에서 공덕제2동은 염리동 관할구역인 동도중고등학교 옆의 일부인 염리동 151번지일대 약 0.0006㎢에 해당하는 면적과 '99. 6. 30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1개반 13세대 32명의 주민을 편입받고, 신공덕동은 공덕제2동 관할구역인 공덕동로타리의 일부인 공덕동 437번지에서 440번지 및 427번지 일대 약 0.0176㎢와 1개반 21세대 55명의 주민과 도화제1동 관할구역인 용산선철로변의 일부인 도화동 1번지 및 25번지 일대 약 0.003㎢와 2개반 59세대 153명의 주민을 편입 받음으로써 공덕제2동의 면적은 0.44㎢에서 0.0164㎢가 축소되어 약 0.424㎢가 되겠고 '99. 6. 30일 현재 인구는 8세대 23명이 감축된 4,067세대 10,929명이 되었음.
- 신공덕동의 면적은 0.24㎢에서 0.0202㎢가 확대되어 약 0.26㎢가 되겠고 인구는 80세대 208명이 증원된 2,567세대 7,145명으로 조정 되었으며, 도화제1동의 면적은 0.003㎢가 축소된 0.237㎢, 인구는 59세대 153명이 감축된 3,735세대 10,82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염리동의 면적은 0.0006㎢가 축소된 0.529㎢로, 인구는 13세대 32명이 감축된 7,938세대 21,369명으로 조정되는 등,
- 동 개정조례안은 洞경계조정에 따른 인근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사전에 조사된 바 있고,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洞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역변경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물론, 해당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사전홍보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9.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洞행정구역中 공덕동로타리, 용산선철도, 동도중고등학교 담장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지역을 합리적인 行政洞경계조정으로 생활권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洞경계조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도화제2동청사 이전으로 도화제2동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덕제2동 관할구역인 공덕동로타리 일부(공덕동 427번지일대 0.0176km²)를
⇒ 신공덕동으로 편입
- 도화제1동 관할구역중 용산선철로변 일부(도화1번지, 25번지일대 0.003km²)를
⇒ 신공덕동으로 편입
- 영리동 관할구역중 동도중고등학교 옆 일부(영리동 151번지일대 0.0006km²)를
⇒ 공덕제2동으로 편입
- 도화제2동청사 소재지를 도화동346-3호에서 도화동 413-6으로 변경

3. 주요토의 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 제4조 제5항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규제여부 : 해당 없음

라. 의견조사 : (1) 시구의원 의견

- 시의원(1선거구, 2선거구) : 찬성
- 공덕 2동 구의원 : 찬성
- 신공덕동 구의원 : 찬성
- 도화 1동 구의원 : 찬성
- 영 리 동 구의원 : 찬성

(2) 주민의견 : 찬성

※ 서울특별시와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사전협의[행정 13120-1736('99. 6. 17)호]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따로붙임)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의 "동사무소 설치, 영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의 동사무소(명칭)란중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도화제2동 및 영리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할	일부 지역 관할
마포구	공덕제2동	공덕동 378-6		공덕동중 공덕제1동장, 신공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및 영리동중 150-2,5호, 151번지 지역
	신공덕동	신공덕동26-4	신공덕동	공덕동중 441-3호를 기점으로 429-12호를 경유하여 동 429-15, 동 427-13에 이르는 지역의 이남 지역과 도화동중 1-402호 지역의 이북지역
	도화제1동	도화동 357-8		도화동중 16-5를 기점으로 동 175-1, 동 176-1, 동 179-12, 동 341, 동 347-2, 동 6-27을 경유하여 주력개량 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 구획선을 경계로 하여 363-143에 이르는 도로의 이북 지역 및 신공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도화제2동	도화동 413-6		도화동중 도화제1동장 및 신공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영 리 동	영리동 147-14		영리동중 공덕제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화제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8.11.1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 분	동 사 무 소 명 칭	동 사무 소 소재 지	법 정 동 관 할		구 분	동 사 무 소 명 칭	동 사무 소 소재 지	법 정 동 관 할	
			전 지역 관 할	일부 지역 관 할				전 지역 관 할	일부 지역 관 할
(생략)					(현행과 같음)				
마포구	공덕 제2동	공덕동 378-6		공덕동중 공덕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공덕 제2동	공덕동 378-6		공덕동중 공덕제1동장, <u>신공덕동</u> 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u>염리동</u> 중 150-2, 5호 151번지 지역	
	신공덕동	신공덕동 26-4	신공덕동		신공덕동	신공덕동 26-4	신공덕동	공덕동중 441-3호를 기점으로 <u>동429-12호를 경유하여 동429-15, 동427-13에 이르는 지역의 이남지역과 도화동중 1-402호 지역의 이북지역</u>	
	도화 제1동	도화동 357-8		도화동중 16-5를 기점으로 동175-1, 동176-1, 동179-12, 동341, 동347-2, 동6-27을 경유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 구획선을 경계로 하여 동363-143에 이르는 도로의 이북지역	도 화 제1동	도 화 동 357-8		도화동중 16-5를 기점으로 동175-1, 동176-1, 동179-12, 동341, 동347-2, 동6-27을 경유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 구획선을 경계로 하여 동363-143에 이르는 도로의 이북지역 과 <u>신공덕동</u> 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도화 제2동	도화동 346-3		도화동중 도화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도 화 제2동	<u>도 화 동 413-6</u>		도화동중 <u>도화제1동장, 신공덕동</u> 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생략)					(현행과 같음)				
	염리 동	염리동 147-14	염리동		염리 동	염리동 147-14	염리동	<u>염리동</u> 중 <u>공덕제2동</u> 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생략)					(현행과 같음)				

■ 調整對象地域 増減 現況

○ 3개동 5개지역 (93세대, 240명)

'99.6.30현재

조정전 대상동 현황				조정 대상지역 현황				조정후 등현황(결과)			
동명	면적	통반	세대수 인구	구분	면적	통반	세대수 인구	면적	통반	세대수 인구	
신공 덕동	0.24 km ²	9통 68반	2,487세대 6,937명	편입 받음	0.0202 km ²	3반	80세대 208명	0.26 km ²	9통 71반	2,567세대 7,145명	
공덕 2동	0.44 km ²	14통 98반	4,075세대 10,952명	편입 당함	0.0170 km ²	1반	21세대 55명	0.424 km ²	14통 98반	4,067세대 10,929명	
				편입 받음	0.0006 km ²	1반	13세대 32명				
				결과 (축소)	-0.0164 km ²	0	-8세대 -23명				
도화 1동	0.24 km ²	12통 102반	3,794세대 10,974명	편입 당함	-0.003 km ²	2반	-59세대 -153명	0.237 km ²	12통 100반	3,735세대 10,821명	
열리 동	0.53 km ²	24통 189반	7,951세대 21,401명	편입 당함	-0.0006 km ²	1반	-13세대 -32명	0.529 km ²	24통 188반	7,938세대 21,369명	